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강소특구별 특화분야 관련 기업의 역량강화 및 애로해결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특구기업의 질적 성장 도모

□ 사업내용

- 기술특성화 지원, ESG 진단·컨설팅 등 경영 역량 강화, 특성화 클러스터 기반조성 등 기업수요 기반 지역 특성화 육성 지원

2. 지원내용

□ 예산규모: 총 640백만원

- 강소특구별 세부 예산(안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세부예산	합계
인천서구	640	640

□ 지원내용

- 강소특구 특화분야 산업을 육성하고 강소특구 내 기업 수요를 반영, 시장 진출을 위한 다방면 기업 지원

구분	세부내용
지원금액	각 강소특구별 세부예산 참조
지원기간	인천 서구 2026. 03. 10. ~ 2027. 03. 09. (12개월)
지원내용	특구 혁신주체 대상 기능별, 혁신기술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등
기타사항 (중요)	① 지원기간(협약기간)은 검토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관련법령 및 규정*에 따라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기술핵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'동시수행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(3책 5공)' 예외 적용 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64조의제3항제3호, 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」 제42조제2항, '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 제외 과제(안)(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 심의, 2025.10.22.)

□ 지원대상

-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

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
·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이 해당 사업 중 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」에 따른 특화 개별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됨 * 필요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·운영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며, 공동연구 개발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

○ 지역 특성화 육성 사업의 수혜대상

수혜대상
· 강소특구 내 기업 · 강소특구 소재 기초지자체 기업 중 ①특화분야 기업, ②강소특구 육성사업 수혜기업, ③공공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

추진방식

- 기술핵심기관 직접수행(공동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) 및 특화지원기관 선정

세부 사업내용

- 강소특구 내 기업, 지역 특화기업 등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술특성화, 경영진단 및 컨설팅, 특성화 클러스터 기반 조성 등 지역 특화분야 맞춤형 지원

< 지역 특성화 육성사업 지원분야 범주구분(안) >

구분	기술특성화	경영 역량 강화	특성화 클러스터 기반 조성
추진 내용	기술개선, 시험인증, 시제품 등	ESG 경영컨설팅 진단, 마케팅, 판로개척, 해외진출 지원 등	인재양성, 커뮤니티운영, DB구축 등

* 각 특구별 필요에 따라 기술핵심기관에서 추가·변경 가능, 지원분야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기술핵심기관의 사업공고에 명시하여 추진

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등

- (기관부담연구개발비) 해당사항 없음

중소·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

-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 -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
 - 중소·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
-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- 지식서비스분야, S/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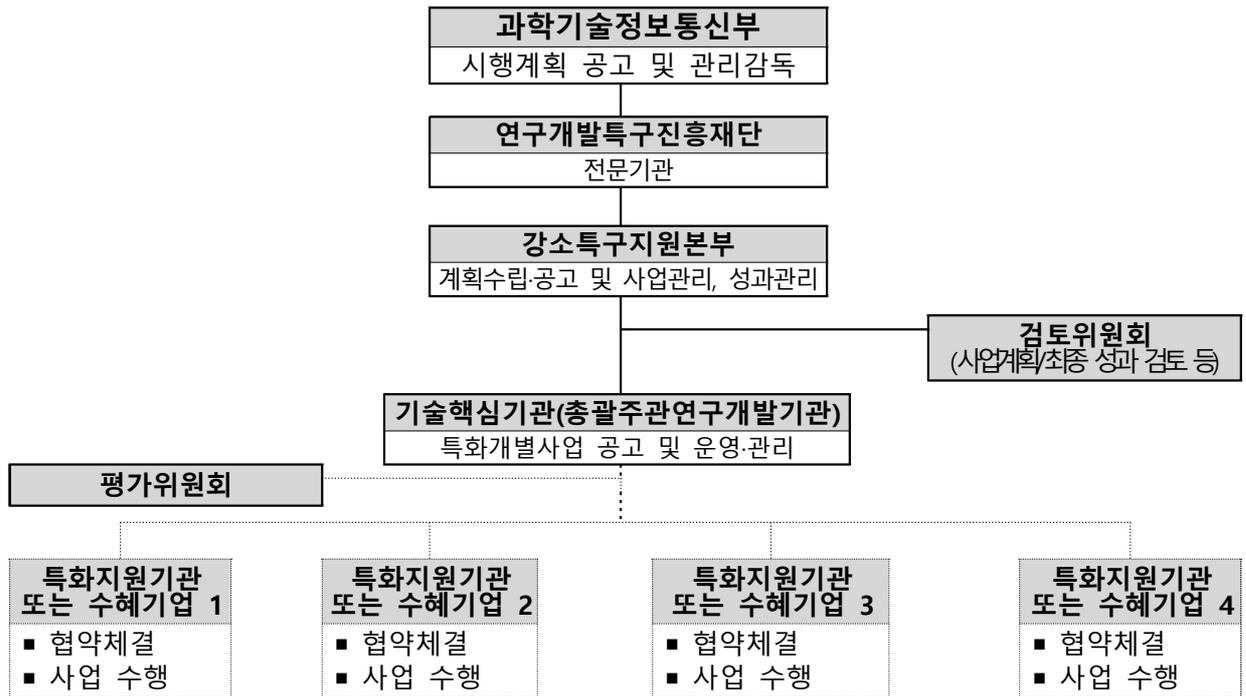
연구개발성파로 인한 수익의 납부: 해당사항 없음

3.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

사업 추진체계

-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 체결* 후 사업 수행하며, 기술핵심기관에서 특화 개별사업의 특화지원기관 또는 수혜기업 선정·지원**

- * 특화개별사업 추진 시 기술핵심기관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, 강소특구육성사업 중 특화개별사업을 기획, 평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함
- **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에서 특화개별사업의 세부 지원내용 별도 공고 후 추진



□ 추진절차



*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사업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협약 일정 및 지원기간 등 조정 가능

□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: 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」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부실위험 확인 관련 제출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'22년도~'24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(국세청(홈텍스)발급) 및 회계감사보고서 * 접수마감일 기준 '25년도 결산 미완료에 따라 신고된 전전년도('24년도)까지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- ※ 단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·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,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, 유동비율,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
- ※ 검토위원회 이후 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」의 제19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,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4. 신청방법 및 절차

사업공고
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(www.msit.go.kr)
-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
-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www.innopolis.or.kr)
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.go.kr)

신청방법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.go.kr)을 통한 신청

신청 시 주의사항

- **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**
-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모든 과제 정보(신청항목)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여 '제출완료'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(과제)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상당 시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미접수 처리됨.
- 전산 등록 시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
-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등록 제출
 - ※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
-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, 필수서류가 제출형식에 맞지 않거나 날인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미비한 경우 해당 과제는 사전지원제외 처리될 수 있음

제출서류: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(PDF, 한글, 엑셀) 형태로 IRIS 시스템 업로드

번호	서류명	서식	제출대상			파일형식
			주관	공동	위탁	
1 (필수)	연구개발계획서	서식 1호	○	-	-	HWP
2 (필수)	사업자등록증	-	○	○	○	PDF
3 (필수)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서식 2호	○	○	○	PDF
4 (필수)	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※ 표준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도('22~'24) 기준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	-	○	○	○	PDF
			※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			
5 (필수)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※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	-	○	○	○	PDF
			※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			
6 (필수)	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¹⁾ ※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	-	○	○	○	PDF
			※ 비영리기관 제출 제외			
7	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	서식 3호	해당시	해당시	해당시	PDF
8	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(관련 증빙 별첨 필수)	서식 4호	해당시	해당시	해당시	PDF

번호	서류명	서식	제출대상			파일형식
			주관	공동	위탁	
9 (필수)	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	서식 5호	○	○	○	PDF
10 (필수)	연구윤리·청렴 및 보안서약서	서식 6호	○	○	○	PDF
11	기관(기업) 소개자료	-	-	○	○	PDF
12	전문연구사업자신고증(원본대조필)	-	-	해당시	해당시	PDF
13 (필수)	참여연구원 정보	서식 7호	○	○	○	엑셀(Excel)

- 1) 확인서 발급사이트: 중소기업확인서(<http://sminfo.mss.go.kr>), 중견기업확인서(<https://mme.or.kr>)
 ※ 주의사항: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, 제출서류 내 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뒷자리) 삭제 후 제출

5. 사업 관련 문의

문의처

- 사업총괄문의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소특구지원본부(@innopolis.or.kr)

담당부서	담당자	연락처	전자메일	담당 특구
강소특구육성1팀	김효정	031-400-4874	hjkim624	인천서구

- 세부 사업 수행 관련 문의: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

강소특구	기술핵심기관	담당자	연락처	전자메일
인천 서구	인천대학교	김도훈	032-835-9199	kimdo@inu.ac.kr

6. 기타사항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
- 연구개발비 지급 시기는 정부정책이나 정부예산 편성·지급 상황을 고려하여 협약시 별도로 정할 예정
- 유의사항

공통사항
가. 지원금액 및 지원(협약)기간은 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.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(사무실, 휴대전화, 이메일 등)로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.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.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·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,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바.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·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지침·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

□ 관련법령 및 규정
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*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,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○ 과학기술기본법,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, 시행규칙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○ 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
관련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○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

- 특화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대상, 지원범위, 지원규모, 추진절차 등은 기술핵심기관이 별도 공고 예정
 - 특화개별사업의 협약기간은 특구재단과 기술핵심기관 간 협약기간 이내로 함
- 기술핵심기관 간접비는 기술핵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는 연구개발비의 최대 10%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
 - 영리법인의 경우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할 수 있음
- 본 사업은 2026년 연구개발특구육성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종합 시행 계획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9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술핵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함
 - 협약체결 시, 각 강소특구별 기술핵심기관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특구재단이 검토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협약을 체결함
 -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협약종료 월에 최종평가를 실시